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하는 절수설비 중 변기의 최대 사용수량을 정할 때 전제가 되는 공급수압의 기준을 98킬로파스칼로 정하고, 온수·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을 온수와 냉수 중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중 더 큰 값으로 구체화하는 등 절수설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치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년도분)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1쪽)

기금법인	① 기금법인명		② 인가번호	
	③ 설립등기일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회계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체	⑦ 대표자		⑧ 업종	
	⑨ 근로자 수(명)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명)	
	⑪ 납입자본금(천원)			
기본재산 현황 (천원)	⑫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			
	당기 변동 금액	증가	⑬ 사업주 출연	⑭ 수익금·이월금 전입
			⑮ 사업주 외의 자 출연	⑯ 기금법인 합병
		감소	⑰ 기본재산 사용	⑱ 기금법인 분할 등
		⑲ 소계		
⑳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				
기금 운용 및 관리 (천원)	운용방법	㉑ 금융회사 예입·예탁		㉒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㉓ 유가증권 매입		㉔ 보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㉕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㉖ 기타
	㉗ 근로자 대부			
	㉘ 합계			
기금사업 재원 (천원)	㉙ 당기 기금운용 수익금			
	㉚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 범위			
	㉛ 해당 사업(장) 자본금 100분의 50 초과액			
	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			
	㉝ 이월금 등			
㉞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㉔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㉕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㉕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㉖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
	㉖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		㉗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㉗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구분		계		목적사업		대부사업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사업 실적 (천원, 명)	복지 사업 비	㉙ 주택구입·임차자금					
		㉚ 우리사주 구입자금					
		㉛ 생활안정자금					
		㉜ 장학금					
		㉝ 재난구호금					
		㉞ 체육·문화활동 지원					
		㉟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비용 지원					
		㊱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					
		㊲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㊳ 그 밖의 복지비					
		㊴ 소계					
	㊵ 기금 운영비						
	㊶ 잔액						
	㊷ 합계						

선택적 복지비 (천원, 명)	㊸ 금액	㊹ 수혜자수

부동산 현황 (천원)	㊺ 명칭	㊻ 금액	㊼ 취득일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또는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금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연도 결산서 1부	수수료 없음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합니다) 1부	

작성방법

1. (년도분)란에는 기금법인의 회계연도 말일이 포함된 연도를 적습니다.
 - ⑥ 회계연도란에는 기금법인의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말일을 적습니다.
2. ⑧ 업종란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란에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협력업체 근로자"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합니다.
4. ⑪ 납입자본금란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조합·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5. ⑫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란에는 기금의 전기 회계연도 말일까지 조성된 기금액을 적습니다.
6. 당기 변동금액란(⑬ ~ ⑮)은 해당 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액을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적습니다.
7. ⑬ 사업주 출연란에는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8. ⑭ 수익금·이월금 전입란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해당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 결산 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협의·결정한 금액이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 금액 중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협의·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⑮ 사업주 외의 자 출연란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출연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0. ⑯ 기금법인 합병란에는 기금법인 합병으로 인한 기본재산 증가액을 적습니다.
11. ⑰ 기본재산 사용란에는 ⑩부터 ⑫까지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⑱ 기금법인 분할 등란에는 기금법인 분할 등으로 인한 기본재산 감소액을 적습니다.
13. ⑲ 소계란에는 사업주 출연(⑬), 수익금·이월금 전입(⑭), 사업주 외의 자 출연(⑮), 기금법인 합병(⑯)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재산 사용(⑰), 기금법인 분할 등(⑱)을 합한 금액을 뺀 [(⑬+⑭+⑮+⑯)-(⑰+⑱)] 금액을 적습니다.
14. ⑳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란에는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⑫)과 소계(⑲)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기금 운용 및 관리란(㉑ ~ ㉔)에는 ㉑의 기본재산이 운용 또는 대부된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16. ㉑ 근로자 대부란에는 기본재산에서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임차자금, 우리사주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대부되어 있는 전체 금액(누계 금액)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전기 말까지 30명에게 1억원이 대부금으로 쓰이고 있고, 해당 연도에 1천만원을 1명에게 대부했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대부한 경우에, 총 대부금액은 1억1천만원으로 적습니다. 이하 제32호에서도 같으며, 이 경우 수혜자 수는 32명으로 적습니다.
17. 기금사업 재원란(㉕~㉗)에는 기금사업(㉑) 근로자 대부는 제외합니다)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재원을 적습니다.
 - ㉑와 ㉔의 합계액은 ㉕과 일치해야 합니다.
18. ㉕ 당기 기금운용 수익금란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금의 수익금으로 기본재산에 전입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㉖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 범위란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해당 회계연도 출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의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㉗ 해당 사업(장) 자본금 100분의 50 초과액란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장)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㉘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란에는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의결한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운영상황 보고 시 ㉘ 이월금 등란에 기재하지 않고 ㉘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란에 남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22. ㉙ 이월금 등란에는 전기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23. ㉚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란에는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24. ㉛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㉚ 중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5. ㉜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란에는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26. ㉝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㉚-㉛)을 소속 근로자 수(㉑)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27. ㉞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㉚)을 협력업체 근로자 수(㉑)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28.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란(㉟ ~ ㊲)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9.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란에는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액의 합계(⑬+⑮)를 적습니다.
30. ㊱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목적사업을 한 경우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1. ㊲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 중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32. 복지사업비(㊳ ~ ㊵)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의 사업 실적을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대부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이용한 근로자 대부(㉑)를 포함합니다.
33. ㊶ 기금 운영비란에는 복지사업 외에 기금 운영과 관련한 지출비용을 적되, 수혜자 수는 적지 않습니다.
34. ㊷ 잔액란에는 남아 있는 목적사업 재원으로, ㉑와 ㉔의 합계액에서 ㊳부터 ㊵까지의 합계액(㊳)과 ㊶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5. 선택적 복지비란에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한 경우 사용한 금액(㊷)과 수혜자수(㊸)를 ㊳ ~ ㊵에 해당하는 복지사업비 중 그 운영실적(총액과 수혜자수 합계)을 적습니다.
 - ※ 선택적 복지제도 실적은 ㊳ ~ ㊵에 해당하는 복지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여 100명에게 1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㊳에는 1천만원, 100명을 기재하고 ㊷, ㊸에도 1천만원, 100명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6. 부동산 현황란에는 기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적습니다.
 - 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출연받거나 기부받은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당시의 시가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취득일은 기금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여 등기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1명당 수혜금액이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8-4호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중 2..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2. 적용기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현 행('17. 12. 29일자 고시)	변 경
2. 적용기간 1)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u>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u> 2) 복지급여 지급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 적용기간 : <u>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u> 까지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동일하게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철근간격 변경 및 데크판재의 호환이 가능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삼광선재(대표자 신용철)		
	주 소	(우)1858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삼수문길 25-34		
	전화번호	031-351-7472	팩스번호	031-351-7471